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55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김문수・주철현・박지원

정일영 • 박해철 • 김남근

최민희 • 이용우 • 문정복

서영교 · 김준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인사청 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 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7항 중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71조 본문 중 "제7장의 규정"을 "제7장"으로 한다.

제85조의2제8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을 "제7항까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	7		
조 및 제129조부터 <u>제132조까</u>	제132조까		
<u>지의 규정을</u> 적용할 때에는 공	<u>지를</u>		
무원으로 본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②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	1		
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			
위원회 위원장, <u>국가인권위원</u>			
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	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u>위원장</u>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 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3. (생 략)

③ ~ ⑥ (생 략)

-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제6장과 <u>제7장의 규정을</u>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있다.
-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 ⑦ (생 략)
 -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 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 터 <u>제7항까지의 규정을</u> 적용하 지 아니한다.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준용규정)
<u>제7장</u>
.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제7항까지를</u>